[무배당 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25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2501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10년/20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연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깁스치료비				
	일반상해수술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상해척추손상수술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보이스피싱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최초	5년	전기납	18세 ~80세	월납 연납
		갱신	5년	전기납	23세 ~95세	월납 연납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최초	3년	전기납	18세 ~80세	연납 월납
		갱신	3년	전기납	21세 ~95세	연납 월납
		갱신	2년	전기납	36세 ~98세	연납 월납
		갱신	1년	전기납	27세 ~89세	연납 월납
제도성 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특별약관 및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에서,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최초가입 보험기간(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기 특별약관은 갱신주기((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3년)마다 자동갱신 됨
-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및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에 대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 및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다. 보험료 납입방법

- 상기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 」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

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1) 대상 특별약관
가.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나.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다.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2)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함. 단,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생한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3)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금액을 말함

(4)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5) '18.(2)'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함

19. 기타

(1)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2)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3)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함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4) 응급실내원비(응급) 담보와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5)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 불가함

(6)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및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7)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및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담보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8)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담보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9)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10)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및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11)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상해척추손상수술 및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담보의 경우, 일반상해수술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2)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담보와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13)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담보,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담보,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14)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1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환 가능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3. 적용대상계약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

(2)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

(3)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

(4) 기본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

(5) 단체취급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6)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

(7)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

4.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자동갱신되는 선택계약의 정산액은 제외함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함

(3)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함

5. 분할납입기간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에서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함. 단,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함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